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 문제점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미루

목 차

광범위한 규제 범위

심의 과정의 문제

방심위의 문제점

차단방식의 문제

심의 주체의 문제

1. 광범위한 규제 범위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심의위원회
의 직무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1. 광범위한 규제 범위

- 심의 대상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헌·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시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2. 심의 과정의 문제점

통신 심의 과정



2. 심의 과정의 문제점

- 해외 사이트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게시물 작성자, 홈페이지 운영자 등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가 없음 → 이의제기 절차의 미비
- 신고자의 주장에 의존하여 심의하고 있고, 중앙행정부처의 요청에 거의 따르고 있음 → 독자적인 심의보다는 공공기관의 부속기능으로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짐
-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처음 결정했던 기관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임

2. 심의 과정의 문제점

- 방심위가 현재 특정 게시물의 불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짐 → 국가보안법의 저촉 여부, 불법 의약품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방심위는 전문성이 없음
 -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요청을 기계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에 불과함

2. 심의 과정의 문제점

- 광범위한 심의대상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2장 심의기준

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제5조), 헌정질서 위반 등(제6조), 범죄 기타 법령 위반(제7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8조), 광고 선전 등의 제한(제9조)

제8조 제1호의 자. 그 밖에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8조 제2호의 카.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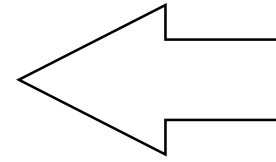
조치 대상	조치 이유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과도한 욕설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연합 홈페이지)	국가보안법 위반
인터넷 기업 대상 사드 유해성 제기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	'사회 혼란' 야기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2차 보이콧이라는 이유로 대량 삭제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의 '시멘트 관련 게시물' 삭제	한국양회공업협회의 명예 훼손
노스코리아테크 사이트 차단	국가보안법 위반
성소수자커뮤니티 차단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근거 '동성애'를 음란물로 지정
위민온 웹 차단	불법의약품 판매
진보넷-디지털 보안가이드 '차단된 사이트 우회 접속 방법' 게시물 임시 조치 요청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2. 심의 과정의 문제점

- 2019년 MBC 보도에 따르면...
 - 2019년 3월 25일 기준, 방심위가 차단한 사이트는 6천 3백 27건
 - 2018년 방심위가 차단한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18만 7천건으로,
“하루 8시간씩 다른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접속 차단만 심의한다
고 해도 한 시간에 100여개가 되는 사이트의 차단을 결정” 한 것
이라고 보도

○ 이동수 사회법익보호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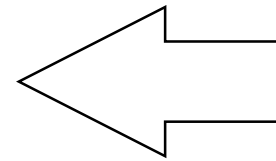
-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는 '0000'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의사가 개설한 사이트인데 '미프진'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기부금 지불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신용거래 등 판매정보가 있고, 밑으로 내려 보면 국가에 South korea, 대한민국으로도 판매가 이루어지는 불법사이트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단 대상 사이트에 대한 표면적인 설명

○ 전광삼 소위원장

- 위원님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약품 판매 정보에 대해서도 사무처 사전 검토의견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속고 없는 심의

3. 차단방식의 문제점

- https 차단(a.k.a. SNI차단)
 - 인터넷 보안 조치의 허점을 악용하는 방식의 정책
 - SNI는 URL을 포함하는 정보이며, 이는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이다.
 - 행정조치로 인한 차단인지, 단순 오류로 인한 접속 불가인지 확인할 수 없다.
 - 특정 url 차단이 아닌 사이트 전체의 차단이 정당한가?

4. 심의 주체의 문제점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를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정의하고 있지만 2012년 법원은 방심위가 행정기관이며 그 처분은 행정처분이라 인정한 바 있음(2011헌가13사건)
- 행정기관에 심의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견제할 기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행정기관이 불법여부를 판단 함으로써 권력의 필요에 따라 이용자의 표현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 국가검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
 - 행정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용인하고 있는 상태
- 방송통신위원장이 삭제 명령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방심위의 심의가 사실상 강제력을 갖게 됨.

5. 내용규제 정책의 개선 방안

1. 내용규제의 명확한 기준 필요

- 불법이 아닌 내용, 모호한 표현의 심의 규정을 삭제해야 함.
- 정보통신망법 44조7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내용 삭제
- 수 많은 불법 정보 중에서 불법여부 판단이 쉽지 않고 시급한 피해가 없는 경우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 가능한 방심위는 인권침해가 크고 시급한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5. 내용규제 정책의 개선 방안

2.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함.

- 심의 과정에서 숙고 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행정기관인 방심위 권한을 독립적 민간기구 및 사법부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독립적 민간기구: 자율심의 담당

- 사법부: 불법여부 판단. 이와 관련 신속한 처리 절차 마련 필요

- 이와 동시에 법원에 이의 절차를 두어 게시물을 차단 당한 주체 혹은 이해당사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함